

# 주 베트남·주 중국 북경 한국문화원 조사 결과

## □ 조사 개요

- 조사기간 : 2015. 1. 20 ~ 1. 26(5일간)
- 조사중점 : 업무추진비 등 회계처리 및 건물 임대계약 적정성 여부 등

## □ 조사 결과

### [주 베트남 한국문화원]

- 업무추진비 현금 사용후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서 편철
  - 기재부 「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 재외공관 운영경비 예산 세부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은 카드 사용이 원칙
  - 업무추진비를 사전 계획도 없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다 필요시 현금을 사용한 후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서 편철

☞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
- 현지 직원(7명) 인건비 계좌이체 아닌 현금으로 지급
  - 「국고금관리법」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지출관이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출하도록 되어 있음
  - 이에 따라 문화원에서 현지 고용인의 인건비를 지급할 때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문화원은 현지에서 고용한 직원 7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좌이체로 하지 않고 매월 현금(\$3,931)으로 지급함

☞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
- K-pop 행사 참가자 확인절차 없이 현금 지급
  - 문화원은 행사 계획에 따라 목적 및 인원 등 세부 실행계획 등을 사전에 수립하여 행사를 추진하여야 하고, 각종 사례비, 행사참가비 등 예산 집행시 관련문서 등을 증빙으로 구비하여야 함

- 문화원은 K-pop 행사시 19개 팬클럽에 소속 및 인적사항 확인 절차 없이 1,900만동(한화 95만원, 클럽당 5만원) 현금 지급 후 서명만 받아 증빙으로 처리하였고, 또한 동 행사 관련 사회자, 심사자 등에게도 서명만 받고 사례비를 현금으로 지급(사회자 25만원, 심사자 5만원)

☞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

○ 출납공무원(문화원장) 결재만으로 회계업무 처리

- 「재외공관 문화원·교육원 예산운영감독 개선방안」은 외교부 인사기획관실-204(2010.1.6.)에 따라 문화원장 결재로 처리하도록 규정
- 문화원에서 매월 예산 집행시 출납공무원(문화원장) 결재만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것은 절차상 문제점은 없음

○ 물품관리대장 부재 등 주요 물품관리 부실

- 「재외공관회계사무처리규정」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외공관의 비품은 정부 공통서식에 의한 대장(물품관리대장)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음
- 문화원에서 물품 구입 및 비소모품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물품을 관리·유지하여야 함에도 '13년 에어컨 7대를 구입하고도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물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지도 않았음

☞ 2015. 1.26. 조사일 현재 물품관리대장에 주요물품 등재 및 비치

○ 현지 직원 신원조회나 범죄경력 조회 등 절차 생략

- 「재외문화원 행정업무처리지침」에 따라 현지 직원 채용시 범죄경력 등 신원조회 절차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나
- 문화원에서 베트남 현지인(A씨)을 행정원으로 채용(2009.1.1.)하면서 범죄경력 등 신원조회 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채용

☞ 채용절차 미준수 등 부적정

## [주 중국 북경 한국문화원]

### ○ 문화원 1층 로비 커피점 무상 임대

- 「국유재산법」 제30조(사용허가)<sup>1)</sup> 및 제32조(사용료)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
- 따라서 문화원은 국유재산법에 의거 문화원 소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여 적정하게 사용료를 세입조치 하였어야 함
- 문화원은 북경 소재 문화원 건물 1층 로비 일부 국유재산을 ○○○○ 중국법인 ‘○○○○’와 임대계약(계약기간: ‘12.8.14. ~’14.12.31.)을 하면서, 임대료 및 전기사용료 등을 대신하여 문화원 주관 행사 등에 커피, 차 등 음료를 월 3천위안에 해당하는 양 만큼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

### ☞ 국유재산법 위반

※ 2015. 1. 26. 조사일 현재 국유재산법에 따라 유상임대(월 1,350위안)<sup>2)</sup>

## □ 조치사항

- 해외문화홍보원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조치 요구
  - 해당 문화원장에게 주의 촉구
  -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(베트남문화원)
  - 회계업무 부적정 사례는 해외문화원장 회의 및 부임 전 교육자료 활용

1) 공용·공공용·기업용 재산은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할 수 있다.

2) 한화 232,910원(1위안=173.21원)